

청주지방법원 2020. 10. 30 선고 2019나4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0. 10. 30 선고 2019나433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19. 1. 24 선고 2017가단9251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근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

변론 종결 2020. 10. 16.

판결 선고 2020. 10. 30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7가단925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한 각 채권에 대하여 'G동 건물의 층고를 80cm 높이기 위한 공사(이하 '층고 공사'라고 한다)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15,000,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5,000,000원' 및 '공사계약서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산재보험료의 50%인 1,607,000원'의 합계 6,607,000원 상당의 채권만을 인정하였고,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오입금 받은 63,000,000원 중 위 6,607,000원을 공제한 56,393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.

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채권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준공금(공사잔금) 40,000,000원, ② 피고가 대납한 고용보험료 1,258,000원, ③ 피고가 대납한 한전불입금 726,000원, ④ 추가공사비 17,000,000원(= 층고 공사비 15,000,000원 중 원고가 설계업자 F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 5,000,000원 + 창호공사비 7,500,000원 + 전기설비 재배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2,000,000원 + 오하수관로 공사비 2,500,000원)의 합계 58,984,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, 위 각 채권도 모두 공제되어야 하는바,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(피고는 당심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주장은 철회하였다).

2. 판단

가. 미지급 준공금 채권(위 ①항 채권)에 대하여

살피건대, 갑 제7호증의 기재,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에 원고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요구받았으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오입금 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실, 피고가 원고의 동생 H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수도, 건물 간 칸막이 공사, 주차장 아스콘 공사 등 공사가 미완성 되었다는 이유로 다툼 사실 등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,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고용보험료 1,258,000원(위 ②항 채권)에 대하여

살피건대, 원고가 위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,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한전불입금 726,000원(위 ③항 채권)에 대하여

살피건대,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. 5. 26.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26,000원을 한전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7. 4. 6. 한전(I)에 130,730원, 2017. 4. 14. 한전에 88,110원, 2017. 4. 27. 한전에 242,0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수시로 한전에 입금을 반복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가 주장하는 2017. 5. 26.자 입금액 726,000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라. 추가공사비 17,000,000원(위 ④항 채권)에 대하여

살피건대, 총고 공사비 15,000,000원 중 설계업자 F가 부담하기로 한 5,000,000원을 원고가 받아서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에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
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지상목

판사고진홍

판사조정민